

인천지방법원 2022. 6. 8 선고 2022가단23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6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050,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1.부터 2022. 4. 1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임진수

별지